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

주체95(2006)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0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6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6호로 수정보충

주체112(2023)년 10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73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전파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은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와 등록,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며 전파장애를 없애고 무선 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와 등록원칙)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와 등록은 위성통신, 이동통신 같은 무선통신설비와 방송설비, 컴퓨터를 비롯하여 정보처리 기능과 무선망기능이 있는 전자설비, 리용 과정에 전자기파가 발생하거나 무선통신과 방송에 영향을 주는 설비를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와 등록을 정확히 하도록 한다.

제 3 조 (전자, 전파설비의 리용원칙)

전자, 전파설비를 바로 리용하는것은 주파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무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전자, 전파설비의 리용에서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 4 조 (전파관리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전파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전파관리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제 5 조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전파감독기관은 무선통신설비,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 검사, 등록,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 6 조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전파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전파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선통신설비,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 설비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 등록,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7 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전자, 전파설비를 연구개발, 제작, 생산, 판매, 반출입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8 조 (국제 협약의 적용)

전파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2 장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 등록

제 9 조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 및 등록신청)

전자, 전파설비는 의무적으로 기술검사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파감독기관이 따로 정한 전자, 전파설비는 기술검사만 받고 등록은 하지 않을수 있다.

전자, 전파설비를 기술검사받거나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에 기술검사 및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설비인 경우에는 2차원식별부 호가 입력된 신청서를, 전파설비인 경우에는 리용자의 이름, 주소, 품명, 용도, 구입경로, 리용하려는 주파수, 출력, 통신시간 같은것을 밝힌 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 10 조 (전자, 전파설비기술검사 및 등록신청의 접수처리)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 및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전파감독기관은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자, 전파설비를 기술검사하였을 경우에는 전파보증서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제 11조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

전파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할 전자, 전파설비는 다음과 같다.

1. 판매, 공급하려 하거나 연구개발, 제작, 생산, 반입한 전자, 전파설비
 2. 무선조종기능과 항법수신기능이 있는 전자, 전파설비
 3. 위성통신, 이동통신 같은 무선통신망, 무선국부망에 리용되는 전자, 전파설비
 4. 자동차, 열차, 배 같은 이동체에 설치된 전자, 전파설비
 5.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다른 나라 대표부와 국제기구,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 대리사무소, 지사 및 외국인이 기증하는 전자, 전파설비
 6. 다른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대표부, 지사, 기관, 기업체들의 전자, 전파설비
- 기술검사는 전파감독기관에서 하며 전파감독기관이 따로 정한 전자, 전파설비는 해당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할수 있다.

제 12조 (전자, 전파설비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자, 전파설비를 구입 한 경우 10일 안으로 전파 감독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전자, 전파설비는 기술검사를 받은 다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전자, 전파설비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파감독기관에 재등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전자, 전파설비등록증서는 사용기한이 완료되기 전에 전파감독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 13조 (전자, 전파설비의 연구개발, 제작, 생산승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 전파설비를 연구개발, 제작, 생산하려는 경우 과학 기술심의 를 받기 전에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전자, 전파설비의 판매, 공급, 수리봉사승인)

전자, 전파설비를 판매, 공급하거나 전자, 전파설비에 대한 수리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TV와 수자식 TV신호변환기, 라지 오를 비롯한 방송수신설비는 적방송차단인증방식을 도입하고 기술검사를 받은 다음 판매, 공급하여야

한다.

전자, 전파설비의 판매, 수리봉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하며 판매, 공급, 수리봉사정형은 매 월 전파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조 (전자, 전파설비의 반입승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전자, 전파설비를 들여오려는 경우 전파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전자, 전파설비의 반입정형을 전파감독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조 (전자, 전파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이관, 폐기승인)

전자, 전파설비를 설치, 구조변경, 이관, 폐기하거나 전자, 전파설비의 설치장소를 옮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전자, 전파설비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 전파설비를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 전파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전자, 전파 설비를 이동하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 할 경우에는 전파감독기관으로부터 휴대 및 이동승인 또는 대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 등록, 주파수사용료금지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자, 전파설비를 기술검사받거나 등록하는 경우, 무선통신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제 3 장 전자, 전파설비의 리용

제 19조 (전자, 전파설비리용의 기본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선통신설비,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의 리용에서 과학기술적요구와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전자, 전파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제 20 조 (무선통신제원의 할당)

무선통신에 리용되는 주파수, 출력, 변조방식, 호출 및 식별부호, 통신장소, 통신시간 같은 무선통신제원은 전파감독기관이 할당한다.

전자, 전파설비를 리용하여 무선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 감독기관 으로부터 할당받은 무선통신제원대로 하며 그것을 어기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할당받은 무선통신제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무선통신대상과 통화일람표, 통신방법)

전자, 전파설비를 리용하여 무선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 감독기관 이 승인한 대상, 통화일람표, 통신방법대로 통신하며 무선통신과정에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조난, 자연재해, 해적행위 같은 비상정황을 알리는 무선통신은 승인없이 할수 있다.

제 22 조 (통신망의 구성과 리용)

위성통신, 이동통신, 유무선통신 같은 무선통신망과 무선국부망을 구성, 리용하거나 중계 통신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승인없이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한 통신은 할수 없다.

제 23 조 (이동통신설비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손전화기를 비롯한 이동통신말단설비의 휴대와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 24 조 (시험통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 전파설비의 정상상태를 검사하거나 시험전파를 내보내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시험통신을 진행할수 있다. 이 경우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컴퓨터의 보안조치)

컴퓨터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를 통하여 비밀자료가 루설되지 않도록 해당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컴퓨터를 기관업무에 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파감독 기관의 기술 검

사에서 합격된것만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 26 조 (무선통신의 안전보장)

무선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선통신실을 안전성이 담보되는 곳에 정하고 무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7 조 (무선통신국의 운영중지승인)

무선통신국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선통신국의 운영을 립시 중지 하거나 무선 통신국을 없애려는 경우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조 (무선통신일군)

무선통신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전임 또는 겸임무선통신일군이 한다.

무선통신일군의 자격 심사는 비상설무선통신일군자격 심사위원회가 하며 무선 통신일군자격 증발급은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무선통신일군자격을 소유한 성원에 대하여서 만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무선통신사자격을 심사하고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29 조 (방송 및 적 방송전파제압설비의 리용)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파감독기관이 승인한 주파수, 출력, 봉사구역, 사용전기마당세기 같은 기술기준한계를 지켜야 한다.

전력공급기관, 기업소는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의 가동지령은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제 30조 (방송수신설비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방송수신설비를 국가적으로 승인된 통로와 주파수에 고정시키고 리용하여야 한다.

방송수신설비의 통로와 주파수고정, TV체계 프로그램개발과 설치는 국가적으로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수신설비를 다른 나라 또는 괴뢰 및 적대방송통로와 주파수에 맞추어놓거나 고정해놓은 통로와 주파수를 해제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 31조 (고주파설비, 음향증폭설비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고주파설비와 음향증폭설비를 리용하는 경우 정해진 한도에서 장애전파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나라 또는 괴뢰 및 적대방송이 나오지 않게 차폐대책을 세워야 한다.

차폐대책을 세우지 않은 고주파설비, 음향증폭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제 32조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의 조작)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조작에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며 주파수와 출력측정에서 오류가 제기되는 경우 즉시 수정하고 전파감독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조 (전자, 전파설비리용문건의 구비)

전자, 전파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문건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문건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제 34조 (전파관리와 관련한 자료요구)

전파감독기관은 전파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 35조 (주파수의 조정)

전국적인 주파수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비상설주파수조정위원회를 둔다.

비상설주파수조정 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리용하는 주파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 36조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선통신설비,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 등록, 리용질서를 어기는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전파감독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파감독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37조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

정해진 무선통신안전보장질서를 어기고 무선통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제 38조 (중지 처벌)

정해진 주파수, 출력, 호출부호, 통신시간 같은 무선통신제원을 어기고 통신하였을 경우에는 전자, 전파설비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제 39조 (벌금, 몰수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 ~ 150만원, 공민에게 1 000 ~ 1 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전자, 전파설비를 몰수한다.

1.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전자, 전파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전자, 전파설비를 연구개발, 제작, 생산, 판매, 수리봉사, 반출입, 설치, 구조변경, 이관, 이동, 리용, 폐기하였을 경우
3. 무선통신제원을 어기고 통신하였거나 무선통신과정에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공개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위성통신, 이동통신, 유무선통신 같은 무선통신망, 무선국부망을 구성, 리용하였거나 중계통신을 하였거나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하여 통신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시험통신을 하였을 경우
6. 연구개발용손전화기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었거나 손전화기에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거나 승인없이 손전화기의 장치식별번호를 변경시켰을 경우
7.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컴퓨터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기관업무에 리용하였을 경우
8. 전임 또는 겸임무선통신일군이 아닌자가 무선통신을 하였을 경우
9.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 리용에서 기술기준한계를 지키지 못하였거나 차폐대책을 세우지 않은 고주파설비, 음향증폭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
10. TV와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수신설비를 승인된 통로와 주파수에 고정하지 않았을 경우

11. 적방송차단인증방식을 도입할수 없는 TV의 동조기를 분리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적방송차단인증방식프로그램을 개발하였거나 전자, 전파설비의 수리봉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2. 전자, 전파설비비용과 관련한 문건의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분실하였거나 사용기한연장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13. 전자, 전파설비를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14. 승인되지 않은 출판선전물을 수집, 시청, 류포시키는것을 비롯하여 비법적인 목적에 전자, 전파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

제 40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 임있는자에 게 경고처 벌을 준다.

1.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전자, 전파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전자, 전파설비를 연구개발, 제작, 생산, 판매, 공급, 수리봉사, 반출입, 설 치, 구조변경, 이관, 이동, 리용, 폐기하였거나 전자, 전파설비의 설치장소를 옮겼을 경우
3. 승인없이 시험통신을 하였을 경우
4. 전임 또는 겸임무선통신일군이 아닌자가 무선통신을 하였거나 무선통신 일군자격증발급 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5.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비용에서 기술기준한계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6. 방송 및 적방송전파제압설비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전력보장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적방송차단, 제압사업을 맡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회적과제와 로력 동원과제를 주어 적방송차단, 제압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제 41조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다음의 경 우에 는 책 임있는자에 게 3개 월 이 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 벌을 준다.

1. 무선통신제원을 할당받지 않고 통신하였거나 할당받은 무선통신제원을 다른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었거나 무선통신과정에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공개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위성통신, 이동통신, 유무선통신 같은 무선통신망, 무선국부망을 구성, 리용

하였거나 중계통신을 하였거나 다른 나라 통신망을 통하여 통신하였을 경우

3. 승인없이 전자, 전파설비를 리용하여 전파장애를 조성하였을 경우

4. 손전화기에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거나 승인없이 손전화기의 장치식별번호

를 변경시켰을 경우

5. 적방송차단인증방식을 도입할수 없는 TV의 동조기를 분리하지 않았거나 적방송차단인증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방송수신설비를 생산, 판매, 리용하였을 경우

6. TV와 라지오를 비롯한 방송수신설비를 승인된 통로와 주파수에 고정하지 않았거나 고정해놓은 통로와 주파수를 해제하였을 경우

7. TV와 라지오를 비롯한 방송수신설비의 통로 및 주파수고정, 적방송차단 인증방식프로그램개발, 도입, 전자, 전파설비의 기술검사와 수리봉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8. 전자, 전파설비를 밀수, 밀매하였거나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전자, 전파 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처벌을 준다.

제 42조 (강직, 해임, 철직처벌)

전파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강직, 해임, 철 직처벌을 준다.

제 43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 5 장 부칙

제 44조 (시행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73히주체112(2023)년 10월 31일〕 로 수정보충한 전파관리법은 주체112(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